

전문도서관 기준의 동향과 개정 방향 연구

Trend Analysis and Revision of the Special Library Standard in Korea

김 흥 렬*
Hong Ryul Kim

차 례

- | | |
|--------------------------|------------|
| 1. 서론 | 4. 요약 및 결론 |
| 2. 전문도서관 기준의 국제적 동향 | · 참고문헌 |
| 3. 국내 전문도서관 기준의 분석과 개정방안 | |

초 록

도서관 기준은 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이용자서비스, 운영관리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도서관이 수행하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수준을 설정할 때,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관종별 도서관 기준이나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의 활동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서관기준은 오랜기간 동안 개정되지 못하여 현재의 도서관 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법적인 기준도 그 내용이 매우 미미하여 최소한의 기준으로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가의 전문도서관 기준과 국내의 관련 기준들을 분석하여 현재의 도서관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직원, 장서, 시설 기준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키 워 드

도서관 기준, 전문도서관, 장서기준, 시설기준, 직원기준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eonju University, hykim505@jj.ac.kr)
• 논문접수일자: 2011년 12월 9일
• 최종심사(수정)일자: 2012년 1월 3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1월 6일

ABSTRACT

The standard of library is to provide the mission and goals, user services, and operations management of the library. Also, it is can be used as a tool that evaluate a various services and programs of the library. However, library standard of domestic does not reflect a realistic situation of special libraries, therefore it should be revised immediately.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international trend of special library standards in major countries, and compared the legal and recommended standards, and evaluation indicators in Korea. As a result, revised directions of new standard have been proposed. Proposed directions will contribute in revising the special library standard of Korea.

KEYWORDS

Library Standard, Special Library, Staffing Standard, Collection Standard, Facilities Standard

1. 서론

기준은 지침(guideline)으로서 특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비해야 할 절차나 구성 요소를 일목요연하게 정해 놓은 표준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도서관에서의 기준은 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구성요소, 이용자서비스, 운영관리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도서관이 수행하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수준을 설정할 때, 근거자료가 된다(윤희운 2011). 국내에서도 각 관종별 도서관 기준이나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등의 법적인 기준, 도서관운영평가지표 등이 설정되어 이들 활동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도서관 기준은 2003년 이래로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도서관의 자료, 직

원, 업무, 시설 및 설비 환경을 반영하고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으며, 도서관법에 나타난 법적인 기준도 최소한의 부분만 반영하고 있어 업무수행을 위한 세밀하고 상세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문도서관은 그 범위가 정부기관에서부터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설립주체와 규모가 다양하며 그 목적이나 사명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전문도서관의 보편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고 전문도서관의 새로운 정보환경을 반영한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다양한 전문도서관 기준들을 분석하여 현재의 정보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관 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전문도서관의 핵심요소인 직원, 자료, 시설,

예산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도서관 기준의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도서관기준의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문도서관 기준의 국제적 동향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전문도서관 범주는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전문도서관 기준을 제정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Carnovsky 1959).

Cowgill과 Havlik(1972)은 전문도서관의 기준은 도서관 운영 통계의 수집과 분석의 요구가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전문도서관 기준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 (1) 일반적으로 인지되거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전문도서관의 정의가 없으며 (2) 장서, 규모, 운영절차, 시설, 서비스, 직원의 다양성, (3) 모체기관에 의해 부여된 도서관의 목적이나 책임의 다양성을 들고 있다. 이런 연유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과는 달리 법학도서관, 의학도서관, 정부기관도서관 등 특수주제 분야 전문도서관의 기준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나(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 Institutions 2008), 전문도서관(special library)의 기준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독자적으로 전문도서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전문도서관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호주의 전문도서관 기준을 살펴보면, 호주의 전문도서관 기준은 1993년 호주도서관정보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ALIA)가 제정한 "Guidelines for Australian Special Libraries"이다(ALIA 1993). 이 기준은 1999년 그리고 2010년에 수정·보완되었으며, 크게 경영, 직원, 재정, 자원, 서비스, 업무환경(시설)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일본에서도 전문도서관협의회에서 별도의 전문도서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日本専門圖書館協議會 2009). 1950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래 정규적인 도서관 기준이 별도로 만들어지지 못하다가 2001년 7월 18일에 도서관법 제 18조에 따라 「공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고시되었다. 그 후 2009년 6월에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기준 적용의 대상을 기업, 조직, 단체 등의 사립도서관으로까지 확대하였고, 도서관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병행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일본 전문도서관협의회는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우리의 전문도서관에 해당하는 사립도서관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2009년 9월에 운영위원회 내에 사립도서관소위원회를 설치

〈표 1〉 호주의 전문도서관 기준 내용

영역	항목	주요 내용
경영	역할/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은 조직 내의 운영단위로 인정되어야 함 • 도서관의 운영은 사서자격증 소지자에 의해 운영되고 책임이어야 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장은 모든 도서관운영 및 전문적 기능의 제공에 책임을 져야 함 • 도서관장과 모든 도서관직원은 ALIA지침에 따른 업무명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도서관운영은 모든 도서관 업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하고, 유지해야 함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장은 이용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적절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위 경영자측 및 핵심이해당사자들과 도서관의 활발한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함
	성과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와 척도는 제공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 평가, 보고되어야 하고, 매년 개선되어야 함
직원	의무/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은 ALIA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와 기술사서, 보조원 등으로 구성되는 부가적인 직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 • 이들의 의무와 자격은 ALIA의 지침에 따름 • 도서관장은 인사관련부서와 협력하여 필요한 도서관직원의 고용에 책임을 짐
	전문성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도서관직원의 계속교육은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임 • 도서관장과 모든 정규직원은 고능력의 교육과 기술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ALIA전문성 개발계획에 참여해야 함
재정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재정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함 • 도서관장은 회계연도의 예산평가의 준비, 예산승인, 지출관리 책임 • 예산항목은 인건비, 운영비, 구독비용, 교육훈련비용, 자산 항목으로 구성
자원	자원관리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장은 핵심정책자원을 확인하기 위한 정책을 매년 구성, 검토 • 도서관장은 정보자원의 선정, 수집, 보존을 위한 지침을 준비해야 함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자원은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색인, 목록, 분류, 배열되어야 함
서비스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장은 조직의 목적과 관련하여 적합한 서비스와 질적인 수준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함 • 도서관장은 효율적으로 정확하고 최신정보를 제공해야 함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의 마케팅의 전략은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자료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함 • 마케팅전략은 조직에서 도서관의 가치를 높이고 일깨우는데 목적을 두어야 함
	정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직원은 이용자의 면담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용한 정보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함
	자원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장은 문헌전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력망을 개발하고 참여해야 함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장은 도서관내에서 이용자의 정보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책무를 가지고 있음 • 도서관은 필수적으로 이용자의 효과적인 정보접근을 위하여 이용자 교육을 조직하고 제공해야 함
시설	위치와 접근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장은 도서관시설의 계획과 유지에 책임이 있음 • 도서관의 위치는 모든 직원과 이용자에게 편리한 접근을 제공해야 함
	바닥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하중은 호주규정을 따라야 함 • 서가의 배치와 하중을 고려하여 건물구조의 허용량을 정해야 함
	공간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공간은 도서관의 요구를 고려하고, 호주기준을 따라야 함 • 공간의 할당은 직원공간, 서가 및 보존공간, 서비스 및 이용자활동 공간으로 나누어짐
	환경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환경요소는 음향, 조명, 전력, 기타요인 등을 고려해야 함

하고, 『사립도서관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전까지는 『공립도서관설치 및 운영 기준』을 사립도서관의 지침으로 활용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사립도서관의 수, 시설, 장서, 직원, 서비스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사용되었다. 『사립도서관설치 및 운영 기준』의 작성은 『전문도서관협의회』에서 발간한 『전문정보기관총람 2009』에 게재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설치한 도서관 184관의 데이터를 참고하였다. 이 기준은 문부성에서 작성을 주관하고 있으며, 사립도서관의 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사립도서관의 정비 및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준에는 운영일반, 도서관경영, 도서관서비스의 평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참고봉사, 저작권, 도서관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협력, 홍보 및 정보제공, 직원, 시설 및 설비 등 모두 10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상과 같이 전문도서관 기준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전문도서관의 평가와 관련된 지표는

<표 2> 일본의 사립도서관 기준

영역	주요 내용
운영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은 설립이념과 그 모체기관의 전문분야의 도서관으로서 적절한 운영에 노력해야 함 • 사립도서관은 일반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목적과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도서관이 바람직함
도서관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그 설립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경영활동을 전개해야 함
도서관서비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은 그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체기관의 경영방침에 기초하여 도서관 스스로가 점검, 평가가 요구됨
자료의 수집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분야의 도서관으로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와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 정보를 계획적, 지속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활동을 수행해야 함 • 수집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검색하기 위하여 적절한 도구를 작성하는 한편, 검색시스템의 개선에 노력해야 함
참고봉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술환경의 발전과 수집·제공하는 자료 및 정보의 특징, 이용자의 이용형태 및 이용상황, 직원의 배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열람, 복사, 참고봉사 등의 적절한 도서관서비스를 전개하고, 대상인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연구 및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료전시, 강좌 등의 개최에도 노력해야 함
도서관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은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 대학, 국립도서관 등의 상이한 관중 및 관공서, 민간조사연구기관, 교육시설 등과 제휴 및 협력에 노력해야 함
홍보 및 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 등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홍보활동 및 정보공개에 노력해야 함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에는 사서자격과 전문영역에 지식을 소지한 전문적인 직원을 확보해야 함 • 사립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법인, 도서관은 그 설립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의 자질, 능력향상에 노력해야 함 • 도서관직원은 그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내 혹은 도서관외의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수행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노력해야 함
시설·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대체로 정량적 기준보다는 정성적 기준에 치중하고 있다. 즉, 장서, 직원, 시설, 서비스 등의 기준에서 수치화된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둘째, 전문도서관은 그 범위가 매우 넓은데, 특히 미국의 SLA(2003)에서는 기업체, 전문협회, 정부기관, 대학, 학교, 공공도서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직기관, 모체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전문분야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하는 기관 등 광범위한 조직·기관을 전문도서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모든 기관들을 만족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 대한 기준도 전문분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의학도서관 기준, 법학도서관 기준 등이 새롭게 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종래의 기준보다 기준이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도서관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경영부문, 연계 및 자원공유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넷째, 공공, 대학, 학교 등 다른 관중에 비하여 전문도서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미흡한 편이며, 기준을 제정하는 기관도 다르다. 일본은 도서관법에 기초하여 공식적으로 문부성에서

도서관 기준을 주관하고 있으며, 호주는 호주 도서관정보협회에서 제정하고 있다.

3. 국내 전문도서관 기준의 분석과 개정방안

3.1 전문도서관 기준의 종류와 한계

3.1.1 전문도서관 기준의 종류

국내 전문도서관에 대한 기준으로는 법적인 기준인 『도서관법시행령』에 제시된 기준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한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위원회 2003), 그리고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가 제시한 『전문도서관의 사서 수 및 도서관규모 기준』(과학기술정보관리협회 2007) 등의 권장기준이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전문도서관 운영 평가지표』(문화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7)도 이들 기준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먼저, 『도서관법시행령』과 이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에 제시된 전문도서관 관련 기준들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법률에 나타난 법적기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도서관법시행령
시설 및 자료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 이상이어야 한다*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 이상이어야 한다*
직원 배치기준	공중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에 대하여는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용한다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도서관법시행령』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에 나타난 전문도서관 관련 기준은 전문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기준, 그리고 직원배치 등 최소한의 요건을 기준으로 법제화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령들은 전문도서관 중에서도 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문도서관은 예외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전문도서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공중의 이용이 주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열람실면적, 자료권수 등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전문도서관에만 해당하는 별도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직원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5만 미만의 경우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다.

권장기준은 기존의 법적인 기준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 전문도서관의 기능과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1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도서관 기준은 도서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도서관경영의 지표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기로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였다. 따라서 1981년 한국도서관기준이 나온 지 20여년이 지난 2003년 두 번째 도서관 기준이 제정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1년판과 2003년판의 목차를 비교한 <표 4>를 보면 목차가 전면적으로 개정된 것을 알 수 있고 2003년에 ‘전문도서관의 평가’ 항목이

<표 4> 한국도서관협회 전문도서관 기준의 목차구성 비교

1981년판		2003년판	
1. 전문도서관의 원칙과 목적	1.1 전문도서관의 원칙 1.2 전문도서관의 목적	1. 전문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1.1 사명 1.2 목적
2. 전문도서관의 조직과 인사	2.1 전문도서관의 조직 2.2 전문도서관의 인사	2. 전문도서관의 조직 및 인적자원	2.1 일반원칙 2.2 조직 2.3 인적자원
3. 전문도서관의 봉사활동	-	3. 전문도서관의 자료	3.1 일반원칙 3.2 자료구성 및 기준
4. 전문도서관의 자료	-	4. 전문도서관의 시설	4.1 일반원칙 4.2 시설기준
5. 전문도서관의 시설	5.1 전문도서관의 일반기준 5.2 전문도서관의 시설의 배분	5. 전문도서관의 예산	5.1 일반원칙 5.2 배정기준
6. 전문도서관의 예산	-	6. 전문도서관의 이용자봉사	6.1 일반원칙 6.2 대출·열람봉사 6.3 참고·정보봉사
-	-	7. 전문도서관의 평가	7.1 일반원칙 7.2 평가기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3.1.2 전문도서관 지표현황 분석 및 기준의 한계

한국도서관연합(2009)에 수록된 전문도서관은 전부 589개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등 다양한 모체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그 규모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 모든 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 기준을 개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학도서관, 의학도서관 등 특수 주제분야의 전문도서관에 대한 기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홍명자 2006). 전문도서관 기준은 도서관 서비스의 적절성과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척도이다. 또한 전문도서관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도서관 서비스를 촉진시키는 가이드라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

을 수행하는 도서관 기준은 미래에 도달해야 하고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좌표가 되어야 한다.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전문도서관 편)은 권장기준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기준이 개정된 2003년 이후 전문도서관의 양적인 지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결과적으로 2003년판 기준은 현재 국내 전문도서관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각종 국내 전문도서관 관련 현황통계와 2003년 한국도서관기준을 비교해보면 쉽게 드러난다. 아래의 <표 5>는 최근 5년간의 전문도서관 관련 양적지표를 비교한 통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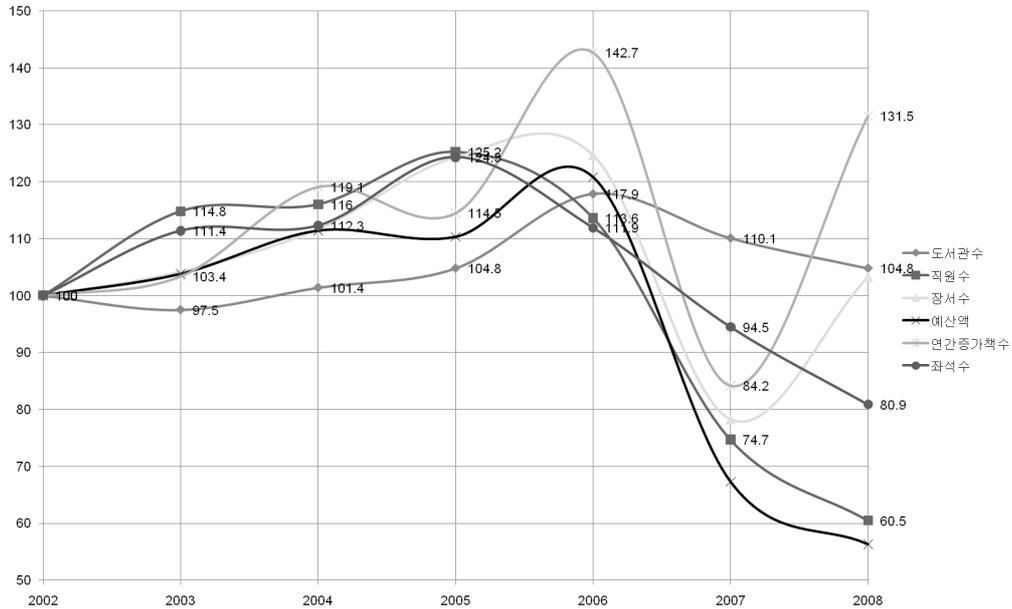
이 통계는 2007년까지는 특수도서관¹⁾을 포함한 통계로서 순수 전문도서관만의 정확한 추이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만, 이 통계에도 전문도서관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정황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표에서는 도서관 수, 연간 증가 책 수와

<표 5> 전문도서관 양적 지표의 현황 분석(2003-2008)

구 분	도서관 수(개)	직원 수(명)	장서 수(책)	예산액(천원)	연간 증가 책 수	좌석 수
2002	562	1,997	11,713	73,230,218	697,919	15,695
2003	548	2,293	12,209	76,023,302	722,197	17,495
2004	570	2,317	13,091	81,589,993	831,350	17,628
2005	589	2,502	14,564	80,791,527	799,561	19,516
2006	663	2,270	14,614	88,463,228	996,625	17,575
2007	619	1,492	9,175	49,316,487	587,891	14,832
2008	589	1,209	12,150	41,254,155	918,252	12,704

* 2003~2007까지는 전문·특수도서관 현황임.

1) 2007년까지는 전문도서관의 통계에 특수도서관으로 구분된 점자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이 포함되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특수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영역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1〉 전문도서관 양적 지표의 변화 추이(2002~2008년)

장서수의 지표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도서관을 가감을 고려하더라도 그 외 지표들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직원 등의 2003년 말에 비하여 매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도서관의 현실적인 상황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589개 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도서관통계에 나타난 2008년 말 현재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의 내용은 국가도서관통계에 나타난 전문도서관 589개 가운데 수치의 예리를 수정하고, 특수도서관, 병영도서관, 대학도서관, 그리고 봉사대상수가 과도하게 많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자료실 등을 제외한 556개 도

서관을 대상으로 재조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특히 통계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봉사대상자수인데, 예리를 조정하지 않고 분석했을 경우에는 1관 당 봉사대상자수가 8,848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현재 전문도서관 기준의 문제점과 한계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표 6>에 나타난 2008년 말 국가도서관통계에 나타난 전문도서관 통계현황을 2003년관 한국도서관기준과 전문도서관 운영평가지표와 비교하여 직원, 장서, 시설, 예산 영역의 양적지표들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2단계로 수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2003년관 한국도서관기준과 2008년 말 국가도서관통계, 그리고 도서관법시행령에서 나타난 직원, 장서, 시설, 예산영역의 양적지표들을 비교

〈표 6〉 전문도서관의 통계현황 분석(2008년 말)

		구분	소계	계	분석결과
직원(명)	정규직	사서	641	1,149	① 정규사서직원 1인당 봉사대상자 수: 237.7명 ② 정규직원 1인당 봉사대상자 수: 132.6명 ③ 정규직 점유율: 82.3% ④ 1관당 정규사서 수: 1.15명 ⑤ 1관당 정규직원 수: 2.06명 ⑥ 1관당 사서 수: 1.42명 (전체사서 직원 중 정사서 비율: 83.6)
		기타	508		
	비정규직	사서	153	247	
		기타	94		
	자원인력		92	92	
자격증	정사서	664	794		
	준사서	130			
봉사대상자 수(명)	봉사대상자 수		200,978	200,978	⑦ 1관당 봉사대상자 수: 274.6명 - 사서 1인당 봉사대상자 수: 191.9명
예산(천원)	모기관 총예산		3,934,719,190	3,934,719,190	⑧ 총예산대비 도서관예산 비율: 1.16% ⑨ 총예산대비 자료구입비 비율: 0.71% (도서관예산대비 자료구입, 인건비 비율: 60.7%, 18.5%)
	도서관 예산	인건비	8,518,782	45,964,679	
		자료구입비	27,915,999		
	운영비	9,259,808			
장서(책)	도서(인쇄)	국내	6,704,838	8,858,404	⑩ 1인당 단행본 수: 60.8 ⑪ 1관당 단행본 수: 16,664권 ⑫ 1관당 연속간행물 구독종수: 807종 ⑬ 1관당 웹DB 구독: 1.46
		국외	2,153,566		
	도서(전자)	국내	331,221	406,865	
		국외	75,644		
	연속간행물(종)	인쇄	125,553	448,923	
전자		323,370			
	웹DB(패키지)	816	816		
원문DB(건)	원문DB	국내	832,971	2,641,202	⑭ 1관당 원문DB 구축 건수: 4,750건 ⑮ 1관당 디지털콘텐츠 구축 건수: 1,853건
		국외	1,808,231		
	디지털콘텐츠	국내	1,007,894	1,030,550	
		국외	22,656		
연간증가책 수	도서(인쇄)		579,563	579,563	⑯ 1관당 도서 증가 책 수: 1.042책 ⑰ 1관당 비도서 증가 책 수: 194.5책
	전자자료(종)		108,164	108,164	
	비도서(점)		289,830	298,830	
	연속간행물(인쇄)		30,760	30,760	
시설	연면적(m ²)		273,240	273,240	⑰ 봉사대상자 1인당 면적: 1.79m ² ⑱ 1관당 면적: 491.4m ²
	좌석 수		10,056	10,056	⑳ 열람좌석 당 봉사대상자 수: 15.1석 - 1관당 좌석 수: 18석 - 봉사대상자 수 대비 열람석 확보율: 6.55%
	PC	업무용	1,072	1,985	- PC 1대당 봉사대상자 수: 166.8명 - 1관당 PC 수: 3.5대
이용자용		913			

하였다. 상세한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이 <표 7>에서와 같이,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과 비교했을 때 2008년 현재 전문도서관은 직원의 수 1.19명으로 적으나 정사서 직원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장서 수에서도 단행본은 적으나 연속간행물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관 당 열람석 수도 18석으로 기준보다 매우 낮으며, 총예산대비 도서관예산 비율도 1.16%로 나타나 6%의 기준보다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종합해볼 때,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은 권장기준으로서 일반 도서관의 상황보다는 비교적 높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기준이 개정된 이후 많은 기간이 지나 상대적으로 전문도서관의 상황에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3년판 기준을 아직도 전문도서관들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준의 설정에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직원과 장서 부분에서 2003년판 기준과 현재 전문도서관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는 2008년 현재 전문도서관의 평균 봉사대상자 수 274명을 기준으로 분석된 직원, 장서, 시설, 예산 영역의 현황을 전문도서관 운영 평가지표 및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과 비교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8>에

<표 7>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국가도서관통계(2008), 도서관법시행령의 양적 지표 비교

구 분		한국도서관기준 (2003년판)		국가도서관통계 (2008년말)		도서관법시행령
직원	직원배치 수	정사서	2	정사서	1.19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직원배치는 공공도서관 기준에 준함
		준사서 비사서	2	준사서 비사서	1.35	
	정사서직원의 비율	50%		83.6%		
장서	기본자료 수	단행본	20,000권 이상	16,664권	전문분야 자료 3천권 이상	
		연속간행물	500종 이상	807종		
	연간증가 수	단행본	200 이상	1,042권	-	
		기타 (비도서)	100 이상	194점		
시설	1관당 열람석수	27.4석		18석		열람실면적 165㎡
	봉사대상자 수 대비 열람실확보율	10%		6.55%		
예산	총예산 대비 도서관예산 비율	6%(연구조사개발비 총액 대비)		1.16%		-
	자료구입비 비율	40%		60.7%		
	인건비 비율	50%		18.5%		

* 556개 전문도서관 봉사대상인구수 152,378명(1관당 평균 274명 기준)

〈표 8〉 전문도서관의 직원, 장서, 시설, 예산 영역 비교

구분		국가도서관통계 (2008년말)	한국도서관기준 (2003년판)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척도					
직원	전체직원 중 정규직의 비율	82.3%	기준 없음	①		②		③	
				50% 미만		50~74%		75% 이상	
	사서1인당 봉사대상자 수	191.9	기준 없음	①	②	③	④	⑤	
				200명 이상	150~ 199명	100~ 149명	50~ 99명	50명 미만	
	전체 사서직원 중 정사서자격증 소지자 비율	83.6%	50%	①		②		③	
				50% 미만		50~74%		75% 이상	
장서	봉사대상자 1인당 평균 장서 수(도서)	60.8권	기준 없음	전년대비 ① 감소 ② 동일 ③ 초과					
	기본 자료 수	단행본	16,664권	20,000권 이상	도서관기준대비 ① 미달 ② 만족 ③ 초과				
		연속간행물	807종	500종 이상	도서관기준대비 ① 미달 ② 만족 ③ 초과				
시설	봉사대상자 대비 열람석 확보비율	6.55%	10%	① 봉사대상자수의 5% 미만					
				② 봉사대상자수의 5~10%					
				③ 봉사대상자수의 10% 이상					
예산	도서관 예산편성	인건비	18.5%	50%	전년대비 자료예산 ① 감소 ② 동일 ③ 초과				
		자료구입비	60.7%	40%					
		운영비	20.8%	10%					

나타나 있다.

위의 〈표 8〉과 같이 전체 직원 중 정규직의 비율, 전체 사서직원 중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 연속간행물 기본 자료 수, 도서관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율 등 직원과 장서영역은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이나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척도(만점기준)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와 도서관 환경변화에 비추어 볼 때,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을 상회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장서와 직원영역은 전면적인 개정과 보완이 요구되며, 예산과 시설영역은 일부분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3.2 전문도서관 기준의 개정방향

전문도서관의 기준은 최근의 정보환경변화를 수용하고 미래지향적인 장서개발 및 서비스 도입의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또한 본 기준은 한국도서관기준이 갖는 권장기준적인 성격을 준수하면서 직원, 장서, 시설, 예산 등의 정량적인 기준들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는 한편, 정성적인 기준들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강화시켜야 한다.

3.2.1 봉사대상자 수 설정

먼저 기본인력, 장서, 시설의 산출근거가 되는 봉사대상자 수에 대한 문제이다. 2003판 전문도서관 기준은 봉사대상자 수를 50인 이하,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으로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직원, 시설 및 장서, 시설(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현재 전문도서관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국가도서관통계(2008년)에 의거하여 전문도서관의 봉사대상자 수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전체 조사대상 589개 전문도서관 중에서 봉사대상자 수 표기가 없는 도서관, 봉사대상자가 과도하게 책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그리고 특수도서관, 병영도서관을 제외한 234개 기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국가도서관통계(2008)
 봉사대상자 수 분석 1

전문도서관 기준(2003년판)	해당 도서관 수
50인 미만	14개(6.0%)
50인 ~ 300인 미만	86개(36.7%)
300인 이상	134개(57.3%)

<표 9>에서와 같이 봉사대상 수가 50인 미만인 기관은 14개(6.0%) 기관에 지나지 않았고, 50~300인 미만은 86개 기관(36.7%), 300인 이상은 134개 기관(57.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0인 이하의 봉사대상 수를 갖는 전문도서관이 거의 없고, 300인 이상의 봉사대상자

수를 갖는 전문도서관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50인 미만을 100인 미만으로 상향하였으며, 300인 이상의 봉사대상 수를 3개 영역으로 세분하였다. 본 (안)에서는 새로운 봉사대상 수를 구분하기 위하여 최근에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에서 제시한 봉사대상 수인 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600인 미만, 6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각 영역별 고루 기관수가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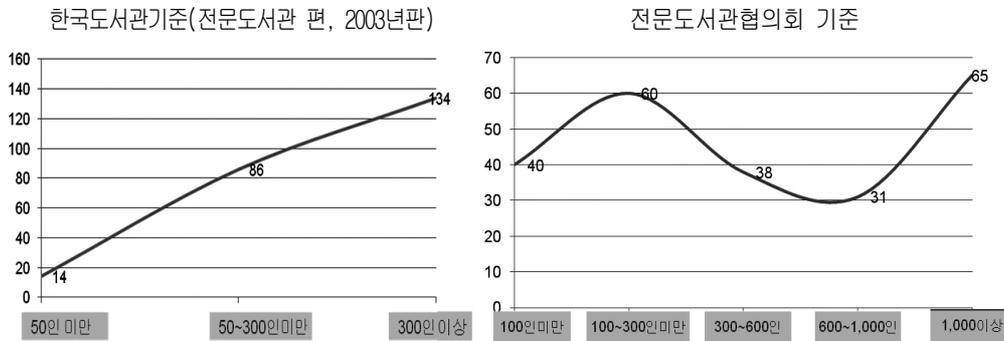
<표 10> 국가도서관통계(2008)
 봉사대상자 수 분석 2

전문도서관협의회 기준	해당 도서관 수
100인 미만	40개(17.1%)
100 ~ 300인 미만	60개(25.6%)
300 ~ 600인 미만	38개(16.2%)
600 ~ 1,000인 미만	31개(13.3%)
1,000인 이상	65개(27.8%)

따라서 전문도서관 봉사대상 수는 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600인 미만, 6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직원, 시설 및 장서, 시설(면적)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2 직원 배치기준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으며, 정사서와 준사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준사서를 비사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준사서를 비사서직



〈그림 2〉 봉사대상자 수 비교

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면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정사서와 준사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사서직원으로 통칭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기본 사서직원 가운데 60% 이상을 2급 정사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정규직으로 확보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판에서 준사서를 비사서 영역에 포함하여 준사서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사서직원을 비사서 직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준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사서직과 구분하여 정사서와 더불어 사서직원으로 통칭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전문도서관은 전체 사서직원의 60% 이상을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전체 사서직원 가운데 정사서 점유율이 83.6%로 나타나고 있어, 1관 당 정규직 사서 수는 5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2003년판의 50% 이상은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본인력 정사서 2명과 준사서 포함 기타 인력 2명 등 4명의 봉사대상 직원 수 50인 이하에 타당한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도서관통계(2008)에 의하면 2008년 12월 말 현재 공공부문의 1관 당 직원 수는 2.25명이고, 이중 1관 당 사서 수는 1.19명이며, 민간부문은 1관 당 직원 수가 1.79명, 1관 당 사서 수가 1.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 1관 당 직원 수는 약 2.02명이고, 사서 수는 약 1.16명이 되는 꼴이다. 따라서 4명의 기본인력(정사서 2명 + 준사서·비사서직 2명)을 배치한 2003년판 기준은 너무 과다하며, 현실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특정 주제분야의 전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1인의 사서 인력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심도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종합해볼 때 전문도서관은 최소단위의 기본 사서 인력을 2명이 필요하며, 도서관의 행정사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

할 비사서 직원 1명(사서직원의 50%)을 책정할 경우, 총 3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증원 인력의 경우, 기본봉사대상자 수가 50~300인 미만인 경우에 ① '봉사대상자 수 50인을 초과하는 50인당' 정사서직과 준사서·비사서직을 각각 1인을 증원하고, 300인 이상일 경우에는 ② '300인 미만까지는 50인을 초과하는 50인당' 각각 1명씩 증원하고, ③ '300인 이상부터는 초과하는 100인당' 각각 1명씩 증원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타당하지 고려해야 한다. 이 직원 배치기준에 따른 가상의 배치인력이 다음의 <표 11>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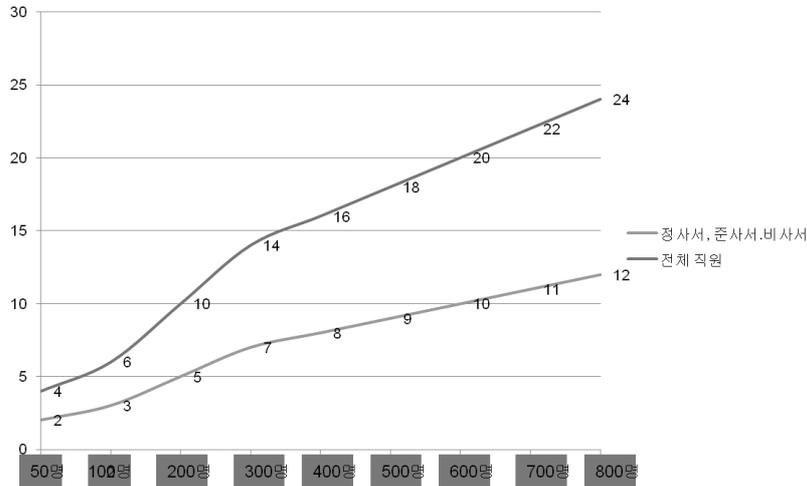
2003년판 기준안을 가지고 시물레이션을 한 결과 봉사대상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서직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2008년 말 현재 전문도서관의 평균 봉사대상자 수 274명, 평균 직원 수가 2.5명에 대비하여 2008년 봉사대상자 수 274명을 2003년 기준에 대비하면, 10명(정사서 5명 + 준사

서 및 비사서 5명)의 직원이 요구되며 이는 현실적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과도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① 기본 봉사대상자 수 오류, ② 증원인력의 과다, ③ 비사서직의 과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 봉사대상자 수를 조정하고, 증원인력 및 비사서직의 조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본 봉사대상자 수가 2003판과 달라지므로, 2003판의 '봉사대상자 수 50인을 초과하는 50인당' 정사서 및 준사서·비사서 직원을 각각 1인 증원하였던 것을 본 연구의 개정 방향에서는 최소 기본 봉사대상자 수를 100인 미만으로 수정하였고, 비사서직원은 사서직원의 50%로 책정하였다. 또한 증원인력은 봉사대상자 1,000인 미만까지는 각 영역별 중간이 되는 봉사대상자를 초과할 때 1인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봉사대상자 1,000인 이상부터는 초과하는 250명당 1인으로 하고자 하였다.

<표 11> 직원 배치기준에 따른 배치인력

전문도서관 봉사대상직원수	가상의 배치 인력		증원기준
	정사서	준사서 비사서	
50명	2	2	기본인력
100명	3	3	'50인을 초과하는 50인당' 정사서 1인과 준사서·비사서 1인 증원
200명	5	5	
300명	7	7	
400명	8	8	'300인 미만까지는 50인을 초과하는 50인당' 각각 1인 증원, '300인 이상부터는 초과하는 100인당' 각각 1인 증원
500명	9	9	
600명	10	10	
700명	11	11	
800명	12	12	



〈표 12〉는 2008년 말 현재 전국 556개 전문도서관의 평균 봉사대상자 수인 274명에 따른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과 본 연구의 개정방향을 연계하여 봉사대상자 수 100명을 기준으

로 산출한 직원 수를 비교한 것이다.

전문도서관은 특수 주제영역에서 심도 있는 전문적인 정보봉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표 12〉 전문도서관 정원 산출의 현행기준과 개정방향

전문도서관 봉사대상직원 수	2003년판 기준			본 연구의 개정방향		
	정사서	준사서 비사서	계	사서직	비사서직	계
50명	2	2	4	2	1	3
100명	3	3	6			
200명	5	5	10	3	1	4
300명	7	7	14	4	2	6
400명	8	8	16	4	2	6
500명	9	9	18	5	2	7
600명	10	10	20	6	3	9
700명	11	11	22	6	3	9
800명	12	12	24	7	3	10

따라서 특정 주제분야의 주제배경에 대한 지식을 소지한 주제전문사서나 주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재교육을 이수한 일반 사서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기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나, 전문도서관이 확보할 수 있는 이들 인력의 수치적인 구분을 제시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해당기관이나 법인에서 배치의 재량권을 갖고 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련 주제전문사서 제도의 시행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2.3 자료 및 장서에 관한 기준

전문도서관은 당해 기관 또는 법인의 특수 목적을 달성하고 조사연구업무를 적절히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도서관은 연구조사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장서를 구입·기증·교환 및 연계(링크), 라이선스 협약, 납본 등의 방법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도서관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인쇄자료 혹은 전자 자료로 출판된 단행본, 연속간행물, 보고서류, 회의자료(프로시딩), 규격자료, 특허자료, 버티컬 파일자료, 그림, 사진, 도면, 지도 등과 시청각자료인 마이크로자료, 슬라이드, 비디오자료, 녹음자료 등을 적절한 수준에서 수집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1차 자료 이외에도 구성원의 연구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분야의 서지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한다.

자료기준의 경우도 봉사대상 직원 수의 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단행본은 봉사대상수 최저인력 기준으로 10,000권 이상, 연간 증가 책 수는 100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봉사대상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영역별 단행본은 10,000권, 연간 증가 책 수는 100권으로 상향 조정되어 있다. 연속간행물은 최저봉사대상자 기준으로 300종을 규정하고 봉사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 영역별로 200~300종으로 상향되어 있다.” 이들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2008년 국가도서관통계에 의하면, 1관 당 전문도서관의 단행본은 16,664권(봉사대상자 수 274명)이고, 봉사대상자 수 1인당 60.8권, 연간 증가 책 수는 1관 당 1,042권, 1인당 2.88권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이의 결과로 볼 때, 기본자료 수에 있어서 현행기준은 봉사대상자 수 100명 미만일 경우 기본자료 수가 20,000권으로 책정된 것을 비롯하여 전문도서관의 현실과는 많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0명 미만의 최소단위 기본 자료 수(단행본)를 2008년 말 전문도서관 기본자료 수의 75% 평균에 가까운 10,000권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 봉사대상자 수 영역별로 단행본과 기타자료를 각각 5,000권씩 증가하는 모형으로 현실화하여 중간영역인 300~600인 미만이 봉사대상자 수 100명 미만 기본자료 수의 2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행본의 연간

〈표 13〉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과 국가도서관통계와의 비교

봉사대상자 수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국가도서관통계(2008년)				
	단행본		연속간행물 기본자료 수	단행본				연속간행물 기본자료 수 (1관당 평균 봉사대상자 수 274명)
	기본자료 수	연간 증가 수		기본자료 수 (봉사대상자 수 x 1인당 도서 수)		연간증가 수 (봉사대상자 수 x 1인당 연간 증가 책 수)		
			50% 평균	75% 평균	50% 평균	75% 평균		
50명	10,000이상	100이상	300이상	3,040	4,560	144	216	1관당 807종
100명	20,000이상	200이상	500이상	6,080	9,120	288	432	
200명	20,000이상	200이상	500이상	12,160	18,240	576	864	
300명	30,000이상	300이상	800이상	18,240	27,360	864	1,296	
400명	30,000이상	300이상	800이상	24,320	36,480	1,152	1,728	
500명	30,000이상	300이상	800이상	30,400	45,600	1,440	2,160	
600명	30,000이상	300이상	800이상	36,480	54,720	1,728	2,592	

증가 책 수는 전문도서관의 연간증가 책 수가 현행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봉사대상자 수 100명 미만의 경우를 2008년 국가도서관통계에 나타난 전문도서관 현황의 75% 평균에 가까운 500권으로 책정하고, 각 봉사대상자 수 영역별로 2003년 기준에는 100권씩 증가하는 것을 현실화하여 250권씩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단행본과 기타자료(회의록, 연구보고서, 마이크로자료, 시청각자료 등)의 비중은 전문적인 주제 분야에 심도 있는 정보 서비스를 수행하고, 학문의 변화속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전문도서관의 특성상 기타 자료의 비중을 향후에는 높일 필요성이 있다.

연속간행물은 2008년 국가도서관통계 현황을 보면, 1관 당 연속간행물은 807종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KESLI의 영향으로 과학기술분야 전문도서관의 연속간행

물 구독 종수가 과거 2003년에 비하여 특히 전자학술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도서관 관련 가장 최근의 기준인 2007년도 과학기술정보관리협회의 기준은 100인 이하에서 100종을 기본자료 수로 하고 봉사대상자 수 각 영역별로 100~200종씩 증가하는 기준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는 과학기술정보관리협회의 기준과 2008년도 연속간행물 통계현황을 근거로 해서 봉사대상자 수 100명 미만일 경우 연속간행물을 300종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과점형의 기준인 100종은 전문도서관 현황을 고려해 볼 때 너무 적은 종수이고, 2003년판 기준인 500종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2008년도 현황에서 100명의 봉사대상자 수에 해당하는 평균 종수는 약 300종을 고려하여 책정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100~200종씩 증가하는 모형으로 설계하여 중간영역인 300~600인 미만이 최소단위 기본종수의 2배가 되도록 하였다.

〈표 14〉 전문도서관의 장서 기준

봉사대상 직원수	자 료					
	기본자료수				연간증가수	
	단행본	연속간행물	기타자료	서지DB	단행본	기타자료
100인 미만	10,000권	300종	10,000점	당해기관의 주제분야에 부합하는 서지DB 1종 이상	500권	500점
100~300인 미만	15,000권	400종	15,000점		750권	750점
300~600인 미만	20,000권	600종	20,000점		1,000권	1,000점
600~1000인 미만	25,000권	800종	25,000점		1,250권	1,250점
1000인 이상	30,000권	1,000종	30,000점		1,500권	1,500점

1. 봉사대상 직원 수는 당해 기관 또는 법인의 연구조사 및 기술직, 행정사무직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수를 말한다.
2. 모든 자료는 매체의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되었으며, 기타자료에는 시청각자료 및 보고서, 프로시딩 등의 회색문헌을 포함한다.
3. 이용가치 상실 등으로 자료를 이관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연간 전체 자료의 3%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4. 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일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의 자료 규정에 따른다.

3.2.4 시설기준

전문도서관의 시설은 이용자의 정보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유용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전문도서관은 그 규모와 범위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규모의 차이를 무시한 기준을 설정하기 매우 어렵다.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전문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으로 165㎡(약 50평) 이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전문도서관은 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면에서 전문도서관의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인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열람석, 정보화기기, 기타 정보서비스 시설에 대한 기준도 없다.

전문도서관 시설에 대한 국외의 관련 기준들을 살펴보면, 미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 나온 병원도서관 기준(2002)에 의하면, “도서관은 사

서들의 정보서비스 지원 활동을 위한 충분한 독립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용자들의 정보이용을 위한 열람시설과 컴퓨터 등의 정보화 기기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호주도서관정보협회가 제정한 호주의 전문도서관 기준에는 1) 도서관은 모든 직원과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2) 바닥의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서가의 배치와 하중을 고려하여 건물구조의 허용량을 결정해야 하며, 3) 활용공간은 도서관의 요구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공간은 직원 공간, 서가 및 보존 공간, 서비스 및 이용자 활동공간으로 구분하였다. 4) 도서관은 또한 음향, 조명, 전력, 기타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전문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한 기준에서는 시설과 관련하여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 설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외의 기준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전문도서관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보 서비스에 필요한 공간은 도서관의 요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서비스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둘째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중앙부에 설치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셋째는 전문도서관의 적절한 서비스를 위해 충분한 규모의 기기나 관련 시설을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 기준들은 전문적인 정보봉사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기기와 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전문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세부적인 정량적인 수치들은 제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시설의 경우는 현행기준인 순사용면적과 공간요소별 면적배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수용하고자 한다. 또한 봉사대상자 대비 열람석 확보비율, 1좌석 당 면적 등도 2008년 현황과 연계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수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4. 요약 및 결론

국내에서 제·개정된 전문도서관의 관련 기준은 도서관법시행령에 제시된 법적기준과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이 있으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도서관 통

계현황을 활용하여 현행 전문도서관 기준의 한계를 제시하고 새로운 도서관 기준의 가능성과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준 산출의 근거가 되는 봉사대상자 수의 설정에서 현행 전문도서관 기준은 봉사대상자 수를 50인 이하,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으로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직원, 시설 및 장서, 시설(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봉사대상자 수가 50인 이하의 전문도서관은 거의 없고, 300인 이상의 도서관의 비율이 과반을 초과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봉사대상자 수는 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600인 미만, 6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직원, 시설 및 장서, 시설(면적)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직원 배치기준에서 현행 한국도서관 기준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으며, 정사서와 준사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준사서를 비사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준사서를 비사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면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정사서와 준사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사서직원으로 통칭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기본 사서직원 가운데 60% 이상을 2급 정사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정규직으로 확보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직원 배치기준은 기본인력 3명(사서직원

2명 + 비사서직원 1명)으로 하고, 증원인력은 봉사대상자 수 1,000인 미만일 때는 각 영역별 중간치를 초과할 때 사서직원 1인을 증원하고, 1,000인 이상일 때에는 250인당 사서직원 1인, 비사서직은 사서직원의 50%로 증원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셋째, 자료 및 장서기준에서는 100명 미만의 최소단위 기본 자료 수(단행본)를 2008년 말 전문도서관 기본자료 수의 75% 평균에 가까운 10,000권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 봉사대상자 수 영역별로 단행본과 기타자료를 각각 5,000권씩 증가하는 모형으로 현실화하여 중간영역인 300~600인 미만이 봉사대상자 수 100명 미만 기본자료 수의 2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행본의 연간증가 책 수는 전문도서관의 연간증가 책 수가 현행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봉사대상자 수 100명 미만의 경우를 2008년 전문도서관 현황의 75% 평균에 가까운 500권으로 책정하고, 각 봉사대상자 수 영역별로 2003년 기준에는 100권씩 증가하는 것을 현실화하여 250권씩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넷째, 시설의 경우는 현행 기준에서 제시한 순사용면적과 공간요소별 면적배분은 현재 전문도서관 환경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수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봉사대상자 대비 열람석 확보비율, 1좌석당 면적 등도 2008년 국가도서관통계 현황과 연계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볼 때, 현행 전문도서관의 기준은 자금의 전문도서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개정될 한국도서관기준은 도서관법이나 시행령에 제시될 수 있는 법적기준으로 활용되어 관련 기준들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2007. 『전문도서관 사서수 및 도서관 규모 기준』. 대전: 동협의회.
- 문화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07. 『전문도서관 평가지표 개발: 경영, 인력, 시설, 자료, 서비스 영역별 평가지표 개발』.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08.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전문도서관 통계현황』. <<http://www.libsta.go.kr>>.
- 윤희윤. 2011. 대학도서관 기준의 동향분석과 개정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5-28.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위원회. 2003.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홍명자. 2006.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도서관의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345-373.
- 専門図書館協議会. 2009. “私立図書館の設置及び運営上望ましい基準案.” [인용 2011.

9. 12].
<<http://www.jsla.or.jp/pdf/091218.pdf>>
-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1993. "Guidelines for Special Libraries." [cited 2011. 9. 11].
<<http://www.alia.org.au/policies/special-libraries.html>>.
- Cowgill, Logan O. and Havlik, Robert J. 1972. "Standards for Special Libraries." *Special Libraries*, 63: 249-260.
- Carnovsky, Leon. 1959. "Standards for Special Libraries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The library Quarterly*, 29(3): 168-173.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 Institutions. 2008. "Guidelines for Libraries of Government Department." [cited 2011. 9. 12].
<<http://www.ifla.org/en/publications/guidelines-for-libraries-of-government-department>>.
- SLA. 2003. "Competencies for Special Librarians : Competencies for Special Librarians of the 21st Century." [cited 2011 9. 11].
<<http://www.sla.org/content/SLA/professional/meaning/competency.cfm>>.